



감 사 원

바른감사
바른나라

수신 고용노동부장관(산재보상정책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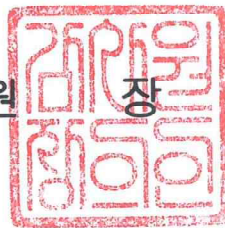
(경유)

제목 심사청구의 처리

1. 귀 부에서 2019. 8. 26.(산재보상정책과-4076) 우리 원에 보내신 청구인 주식회사 [REDACTED] 건설(대표이사 [REDACTED])의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심리하고 불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처분청에도 위 결정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인이 이 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문 사본을 감사원(심사2담당관)으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심사결정서 등본 1건 1부. 끝.

감 사 원 장



부감사관 [REDACTED]

심사2담당관 [REDACTED]

협조자

시행 심사2담당관-602 (2019. 11. 6.)

접수

우 0305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삼청동 25-23)

/ www.bai.go.kr

전화번호 [REDACTED] 팩스번호 [REDACTED] /

/ 비공개(1, 6)

심사결정

분 류 번 호	2019-심사-566
제 목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redacted] 건설(대표이사 [redacted]) [redacted] 대리인 주식회사 [redacted] 건설 회계부 차장 [redacted]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redacted]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REDACTED]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18. 10. 23. 15:50 경 “세종 [REDACTE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¹⁾에서 벽돌이 좌측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있는 후 같은 해 10. 24. “좌측 발등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11. 29. 처분청에 요양급여(구분: 최초요양)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재해조사,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2019. 2. 21.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구분: 최초요양) 지급을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REDACTED] 소재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가 없고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일주일 후 갑자기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재해자는 청구인에게 2018. 10. 23.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청소 및 폐기물 운반작업을 수행하다가 같은 날 15:5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재해자 등 관련자의 진술 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관련자 등의 진술 및 조사 내용

구분 (작성자)	내용	날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자)	▶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2018. 11. 29.

구분 (작성자)	내용	날짜
보험가입자 의견서 (청구인)	▶ 자체 조사결과 사고발생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음 ▶ 이 사건 사고 후 재해자가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고 정상적인 근무를 한 점, 처음에 산재처리를 요구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9. 1. 14.
진술서 (동료근로자 A)	▶ 2018. 10. 23. 재해자와 같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청소 및 폐기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음 ▶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음을 확인함	2019. 1. 27.
진술서 (동료근로자 B)	▶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청소 및 폐기물 운반작업에 3명씩 한 조로 인원 배치를 하여 사고 발생 시 다른 근로자가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재해자와 한 조로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음	2019. 1. 5
진술서 (동료근로자 C)	▶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고 작업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였는데 어떤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2019. 2. 18.
재해조사서 (처분청)	▶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고(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재해자 의견서상 공통진술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redacted] 영상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기록상 이 사건 사고가 기재된 점을 토대로 재해자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9. 2. 21.

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은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구분 (의료기관명)	내용	날짜
의무기록지 ([redacted]영상의학과 의원)	▶ 내원일시: 2018. 10. 23. ▶ 오늘 16:0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2018. 10. 23.
진단서 ([redacted]병원)	▶ 진단명: 좌측 발의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 소견: 재해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 중이고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향후 약 2주 이상의 안정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함	2018. 10. 26.

구분 (의료기관명)	내용	날짜
자문의 소견서 (처분청)	▶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 요양기간이 타당하고 이 후 종결되며 기간 내 취업치료 가능	2018. 12. 24.
자문의 소견서 (처분청)	▶ 재해 경위과 이 사건 상병 간 인과관계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통원 2주 및 취업치료 가능	2019. 1. 17.
소견조회 (병원장)	▶ 재해 경위: 2018. 10. 2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돌이 발등에 떨어짐 ▶ 외상에 의한 수상이며 영상검사 시행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함	2019. 2. 1.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처분청)	▶ 통원 2주 후 종결 타당하고 취업치료 가능 ▶ 통원 2주 타당하며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인정 ▶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고 통원기간 2주가 타당하며 통원취업치료 가능 ▶ 통원 2주 인정,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인정	2019. 1. 30.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2)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재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지에 기재된 수상 경위가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가 없다 하더라도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의견서상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재해자가 스프레이 파스와 붕대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진료기록지 등에 기재된 수상경위 등을 통해 이 사건 사고의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점, ③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자문의사에게 자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자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2019 . 11 . 06 .

이 는 등 본 임

서 기 2019년 11월 6 일

감사원 운영 관리국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7. (생략)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생략)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42조(자문의사)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43조(자문의사회)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회의를 둔다.

②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략)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